

## 【 10 】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7. 04. .  
제출자 : 양주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법인세활·소득세활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,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통세를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로, 「교통세법」을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으로 정비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활·소득세활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을 “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이내”에서 “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 전까지”로 수정하고(안 제24조제1항)
- 나.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“교통세”를 “교통·에너지·환경세”로, “「교통세법」”을 “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”으로 수정하고자 함.  
(안 42조 내지 제44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시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24조 제1항 중** “법인세할·소득세할을 신고한 날부터 60일내에” 를  
“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 
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”로 한다.

**제42조,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중** “교통세”를 각각 “교통·에  
너지·환경세”로, “「교통세법」”을 각각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”  
으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례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 
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 
것부터 적용한다.

## 【지방세법】

第177條의2 (신고 및 납부 <개정 2003.12.30>) ①-----

②-----

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03.12.30>

1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
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

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. <신설 1999.12.28, 2003.12.30>

[전문개정 1994.12.22]

第177條의3 (修正申告納付)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·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·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·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5.12.31, 2006.12.30>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申告納付를 하는 때에는 追加納付稅額을 납부하여야 하며, 還付 받을 稅額에 대하여는 申告와 동시에 還付申請을 하거나 다음 年度分 法人稅割에서 還付 받을 稅額을 공제하고 申告納付할 수 있다.

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納付로 인하여 追加納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, 還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還付利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1994.12.22]

## 신 · 구조문 대비 표

## 신 · 구조문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신고 및 납부) ①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2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	제44조(신고 및 납부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 <u>교통세법</u> 」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교통세</u> 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세표준신고서 사본	1. 「 <u>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</u> 」 <u>교통·에너지·환경세</u>
2. 「 <u>교통세법</u> 」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교통세</u> 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「관세법」 제248조 규정에 의한 신고 필증 사본	2. 「 <u>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</u> 」 <u>교통·에너지·환경세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